

	외국인교원인사규정	규정번호	3-3-11
		제정일자	2004.03.01.
		개정일자	2017.05.01.
		개정차수	6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외국인(원어민) 전임교원(이하 "외국인교원"이라 한다)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원어민)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원어민)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다만, 어학담당 교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임용) ① 신규임용교원의 임용절차는 [별표1]와 같다.

- ② 대학 외국인교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입국절차를 거쳐 부임하여야 하며 교육용 비자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의 외국인 거류등록, 체류연장 및 기타 필요한 절차는 외국인교원 자신이 책임을 진다.

제5조(임용기간 및 재계약임용)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 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임용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별표8]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없이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 ③ 재임용은 [별표6]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④ 외국인교원이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6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연봉금액
3. 기타 계약조건(주당 강의시간, 각종 세액공제 등)

제7조(구비서류) 외국인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 3, 4호는 임용확정 후 제출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이력서
3. 외국인 등록증명서
4. 여권사본
5. 학력 및 경력증명서

제8조(의무) ① 외국인교원은 매학기 주당 16시간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외국인교원은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 참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외국인교원은 학사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교원 인사 규정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외국국적 보유자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는 이 규정이 정한 외국인교원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3.1부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